

2018년 북일면 정기종합감사 결과

- **감사기간:** 2018. 3. 13. ~ 3. 16.(4일간)
- **감사대상기간:** 2016. 3. 1. ~ 2018. 3월 현재
- **감사반:** 권익보호팀장 외 4명
- **지적사항:** 20건
 - 처분종류: 20건(시정6, 주의14)
 - 재정상: 701,630원(회수646,630 / 기타 55,000)
 - 신분상: 3명(주의3)



해 남 군
(감사담당관)

2018년 북일면 정기종합감사 실시 결과

I 감사실시 개요

1. 기본방침

- 가.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나. 지도와 교육을 병행한 감사로 행정의 올바른 방향 제시
- 다. 공사, 용역 및 인·허가 민원 불편사항 해소에 감사 중점
-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및 적극행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면책 추진

2. 감사 중점사항

가. 군정시책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전체적인 관점의 감사 실시

- 업무를 틀을 바로 잡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감사
- 행정의 수요자 입장에서 개선방안 검토

나. 공직자 기본자세 확립 및 취약업무 지속 감사

- 공직자 기본자세 6대 과제 지속 점검하여 행정의 기본 체질 강화
- 행정재산, 민간위탁사무 등 취약업무 주기적 점검체계 확립
- 취약업무 지속 발굴, 행정의 자기 통제 시스템 확립
- 언론보도, 군의회 지적사항 등에 대해 위법·부당 여부 점검
- 계약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부실여부 중점 감사

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감사대상을 일한 내용보다는 부작위 행위로 전환
- 적극적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오는 과감히 면책

라. 부패성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 적용

- 감사결과 문제점, 위법사항 발견 시 책임소재 철저히 규명
- 공금횡령, 토착비리, 고의적 봐주기성 업무처리 반드시 문책
- 무사안일, 책임회피, 업무 및 고의 민원사항 처리 지연행위 상급자까지 연대 책임

3. 총 평

- 과년도 체납액 없는 면 “선정”, 2017년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Ⅲ 그룹 1등”, 2017년 친환경농업 육성 “최우수”, 2017년 산불예방 대책 “우수” 등 군정 주요업무 및 역점시책 추진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모범을 보였으며, 감사에 대비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였고, 감사기간 중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려는 자세가 보임.
- 문서를 생산하면서 개인정보 포함여부를 확인하여 공개·비공개여부를 설정하여야 함에도 문제의식 없이 담당자는 기안을 하고, 중간결재자는 검토 없이 결재처리하고 있음.
- 면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팀간 직원간 유기적인 업무협조로 놓치기 쉬운 사항을 빈틈없이 추진되고 있었으며, 감사에 대비하여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등을 통해 반복지적사항을 상당부분 해소 하였음.
- 5일시장 업무,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태극기 보급사업 등 평소 소홀히 하기 쉬운 업무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음.
- 회계관직(분임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인감사용에 대한 절차를 준수 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사용하였으며, 업무추진비(기관, 부서, 정원 가산)는 사용대상을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고 관행대로 지출한 사례가 발생하였음.

II

처분요구사항 일람표

연번	분야	건명	처분종류		재정상 조치(원)				비고
			시정	주의	계	회수	추정	기타	
		계	6	14	701,630	646,630	-	55,000	
1	총무	개인정보보호 소홀		○					
2	건설	도로점용허가 업무 소홀		○					
3	지역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추진 소홀		○					
4	건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					
5	"	건설공사 대금 지급 지연		○					
6	"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					55,000	
7	"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			603,000			
8	"	환경보전비 미계상		○					
9	세출	회계관직(일상경비출납원) 인감사용 부적정		○					
10	"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						
11	"	세출예산 지출과목 미준수		○					
12	"	현금지급 채권자 영수인 날인 미실시		○					
13	공유재산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						
14	복지	의사무능력 급여관리대상자 관리 소홀	○						
15	"	아동급식업무 소홀		○					
16	민원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					
17	"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 소홀		○					
18	농정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					
19	"	밭토양 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		○					
20	"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업무 추진 소홀	○			43,630			

Ⅲ 분야별 지적사항

1. 일반행정 분야

가. 개인정보보호 소홀

1) 지적사항

-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방법 및 종류 등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 의하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개인정보(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등)가 포함된 문서 35건 (2016년 21건, 2017년 14건/ 총무팀 17건, 희망돌봄팀 2건, 산업팀 15건, 민원복지팀 1건)을 생산, 시행하면서 비공개로 설정하지 않고 대국민 공개로 설정하였으며 일반문서에 준하여 관리하였음.

2) 조치의견

-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철저히 하시기 바람.

2. 공사 분야

가. 도로점용허가 업무 소홀

1) 지적사항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제3항에 의하면 도로 관리청이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라고 하였으며,
-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 제2항에 의하면 군수(읍·면장)가 도로점용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6~2017년도 북일면 ○○리 ◇◇◇-◇번지의 2필지 등 3건의 도로점용 허가를 한 후 군도 점용허가의 경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는 허가내용을 공고하지 않는 등 도로 점용허가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도로점용허가를 한 후 관련법에 따라 군도의 경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시고, 농어촌도로는 허가내용을 공고하시기 바라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기 바람.

나.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추진 소홀

1) 지적사항

-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적인 관리를 통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숙원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의사업(민간자본보조) 추진 지침에 의하면 사업건의(현황사진, 사업계획서) → 예산확보 및 사업 확정 → 보조금 교부신청(사업계획서, 설계서[견적서]) → 설계서의 건축면적, 구조 등에 따라 보조금액 확정 → 계약서 작성 등 → 사업완료(현황사진) →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음에도,
 - ※ 주민복지과-28912호(2016.4.8.), 북일면-3708호(2017.3.30.), 북일면-10744호(2017.10.23.)와 관련임.
- 북일면에서는 “○○ 여자경로당 개보수사업” 등 3건을 추진하면서 사업량(규모) 등 세부내역 없이 견적서에 의해 정산 및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능보강사업(민간자본보조)을 추진하는데 소홀하였음.

2) 조치의견

- 경로당개보수사업(민간자본보조)추진 지침에 의하여 사업 추진 시 사업량(규모), 설계서(견적서) 등 구비서류 작성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다.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설정 부적정

1)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계약의 담보책임)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69조(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의하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전체 목적물을 인수한 날과 검사를 완료한 날 중에서 먼저 도래한 날부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공종을 기준으로 담보 책임의 존속기간을 정하여야 함에도,

- 북일면에서는 “○○ 농로 포장공사” 외 2건의 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과정에서 담보책임의 존속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등 관련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하였음.

2) 조치의견

- 해당 목적물의 검사나 인수 시에는 준공검사일로부터 적정기간의 하자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설정하시기 바람.

라. 건설공사 대금 지급 지연

1) 지적사항

- 「행정자치부 예규 제88호(2017.4.11.)」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6(준공 대가의 지급)에 의하면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완성한 후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정한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계약담당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공휴일과 토요일을 제외)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해야 하며, 그 대가 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 하여야 함에 따라 계약담당자는 검사에 합격한 후 계약상대자의 대금 청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준공 대가의 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북일 ○○ 농로 포장공사」의 준공대가를 지급 하면서 적정 처리기간인 5일보다 2일이 많은 7일이 소요되어 건설공사의 준공대가 지급 업무를 소홀히 하였음.

2) 조치의견

-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대가 지급 기한을 준수하시기 바람.

마. 지역개발공채 징구 소홀

1) 지적사항

- 「전라남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제1조(목적)에는 전라남도의

주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 하고자 전라남도 지역개발 기금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 (매입대상 및 기준) 및 별표 1(공채의 매입대상 및 매입 기준)에 의거 1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수리, 제조 계약을 체결할 경우 대금청구액 중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과 공사계약 및 용역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만큼의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하고, 1,000만 원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금액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함.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 게이트볼장 관리실 설치공사」 외 1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공채를 부족하게 매입하는 등 관련법규 적용을 소홀히 하였음.

2) 조치의견

- 부족하게 징구된 55천원의 지역개발공채는 추가 징구하시고 적정금액의 공채 발행을 확인하시기 바람.

바. 건설공사 감독업무 소홀

1)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건설공사 감독자의 감독 의무) 및 「국토교통부 고시 2015-473(2015.6.30.) -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 지침」 제4조(성실 및 청렴의무)에 의하면 공사감독자는 해당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에 관계서류 등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공사시행 단계별로 확인·검측하고 품질·시공·안전·환경관리에 필요한 감독을 하여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설계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공사 설계의 변경), 제7절(계약금액의 조정)에는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에는 설계변경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 북일면에서는 (주)□□건설(대표자 ☆☆☆)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북일 ○○ 마을안길 확.포장공사」의 경우 법면부 보강 옹벽블럭의 기초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옹벽블럭의 설치 위치상 기존 콘크리트개거의 벽체를 배면거푸집으로 활용 할 수 있고 실제 시공 방법도 그러하여 사업연장 L=24m, H=0.3m의 배면거푸집 7.2㎡를 설치하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305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음.
- □□□□개발(주)(대표자 ☆☆☆)과 계약 체결하여 추진한 「북일 ○○ 용.배수로 정비공사」의 경우 U형 콘크리트 개거를 설치하면서 연접한 농로 법면 콘크리트 옹벽의 벽체를 배면거푸집으로 활용하여 시공하는 것으로 도면을 작성하고 계약자는 도면대로 시공 하였으나, 산출내역서상 해당 거푸집 수량에 대한 금액을 공제하지 않아 과다 계상된 연장 L=11m, H=0.7m의 배면거푸집 7.7㎡에 대해 계약금액 조정 없이 대가를 지급하여 298천원(제경비 포함)을 과다 집행하였음.

2) 조치의견

-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된 부분에 해당되는 603천원은 회수하시고 이후 계약 금액 조정사유 발생 시 관련법령에 따라 계약 금액을 조정하시고, 공사 감독자는 건설공사 감독업무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사. 환경보전비 미계상

1) 지적사항

-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1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의 규정에 의하면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환경훼손·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건설업자는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가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고 그 사용 용도는 환경보전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환경계측비용, 환경관련 인건비용 등으로 제한하고 있음.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북일 ○○ 농로 포장공사” 외 2건의 설계도서를 작성 하면서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지 않음.

2) 조치의견

-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환경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공사금액에 계상 하시기 바람.

3. 세출회계분야

가. 회계관직(일상경비출납원) 인감사용 부적정

1) 지적사항

- 「해남군 재무회계규칙」 제103조(인감의 상호제출) 제1항에 의하면 “금고는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의 성명 및 인감을 징수관, 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제2항에서는 “금고는 출납에 사용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을 미리 제출 하게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편람」 제8장 제신고 업무 제1절 인감의 변경업무 1. 인감신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의 인사이동, 출장 및 휴가 등의 인감을 변경하여야 할 일정사유가 발생 시에는 금고에 출납원의 성명과 인감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고, 2. 인감제출에는 “금고는 출납에 사용되는 공인, 영수인, 지급필인과 사무취급자의 성명 및 인감의 변경사유가 발생시에는 징수관·지출원과 출납원에게 인감의 변경내용을 제출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음.

- 「해남군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관직공무원의 관직 지정)제1항제3호에 의하면 읍면의 경우 재무관은 읍면장, 지출원은 읍면 총무팀장으로 지정 하였고, 같은 규칙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 출장 등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 「지방회계법」 제36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리)에서는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6. 10. 20. “청소차량 주유비” 65,980원을 지출하면서 ○○○○○○팀장 ☆☆☆은 인감변경신고 없이 일상경비출납원란에 날인하여 지출하였고, 2017. 6. 30. “업무추진에 따른 플래카드 제작” 50,000원을 지출하면서 ○○팀장인 ☆☆☆는 분임재무관과 일상경비출납원을 겸임하는 등 총 22건 18,193,930원을 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직무를 겸직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재무관, 일상경비출납원 등 회계관직 변경사유 발생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변경하시고 변경된 인감에 의거 지출하시기 바람.

나.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소홀

1) 지적사항

- 「지방재정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예산으로 편입하고, 공공시설 손실부담금, 계약보증·입찰보증·차액보증 및 하자보수 보증금, 다른 법률에 의한 예치금, 사무관리상 필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경비만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의 규정에는 출납이 완결된 회계연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 회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81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폐쇄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때에 반납하는 경우에는 지출한 세출의 해당 과목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6년 보험료 환급금 2건 43,780원과 2016~2017년 이자 수입 3,027원 등 총 48,124원을 세입으로 편입하지 않는 등 감사일인 2018. 3. 16.까지 세입세출외 현금 관리를 소홀히 하였음.

2) 조치의견

-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중인 48,124원에 대해서 해남군 세외수입으로

세입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 세출예산 지출과목 미준수

1) 지적사항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업무추진을 위한 각종 회의·간담회·행사”, “소속 상근 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직무수행과 관련된 통상적인 경비” 등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 6호 아목에 의하면 연말, 설, 추석 및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이 가능하며, 같은 규칙 8호 가목에 의하면 내방객에게 제공하는 음료, 다과 구입은 읍·면·동의 경우 하나의 독립기관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 기준」 제Ⅳ장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의한 세부집행지침 4. 업무추진비에서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로서 동호인 취미클럽, 체육대회, 생일 기념품, 불우공무원 지원 등에 소요되는 경비에 연간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통상적인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부서운영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전체 직원의 사기양양 경비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 북일면에서는 2016. 2. 19. “직원 격려 설명절 선물 구입” 450,000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하나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등 2016. 2.~ 2017. 12.까지 26건 5,153,500원을 부적정하게 지출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적정한 지출과목에서 예산을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라. 현금지급 채권자 영수인 날인 미실시

1) 지적사항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제3항에 의하면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 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 3. 업무추진비중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 5. 공무원 여비 등
- 「해남군 재무회계 규칙」 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제3항에는 “채권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금고의 송금 납입통지서를 첨부하며 이를 영수인에 갈음한다.” 고 규정하고 있어 계좌 입금이 아닌 현금 지급시 영수인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음.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6. 4. 29. “4월 관내여비” 200,000원 등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총 13건 7,010,000원을 현금지급하면서 영수인 날인 없이 집행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세출예산 현금지급 시 「해남군 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영수인 날인 후 집행하시기 바람.

4. 세무분야

가. 공유재산 실태조사 소홀

1) 지적사항

- 2017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실시계획 통보(세무회계과-25086/2016.6.15.) 공문에 의하면 읍면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공유재산 공부를 기준으로 이용실태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지적도,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위성사진, 측량도면 등을 이용하여 실제의 위치를 찾아 면밀히 조사를 실시하여 누락재산 등을 발굴 보고 토록하고 하였으나,

- 북일면에서는 ○○리 ◇◇◇-◇(86㎡/대)에 대해 북일면 ○○길◇◇ ☆☆☆이 무단점유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실태조사에서 누락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무단점유 공유재산 ○○리◇◇◇-◇(86㎡/대)에 대해서 즉시 대부계약체결 토록 조치하시고, 공유재산 실태조사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5. 복지·민원분야

가. 의사무능력 급여관리대상자 관리 소홀

1) 지적사항

- 북일면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3급인 ☆☆☆이 2018. 1. 19.자로 국민기초수급자 1인가구로 책정되었다. ☆☆☆은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으로 부(♂♂♂)이 주거를 같이 하면서 ☆☆☆의 급여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부(♂♂♂)을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 점검 제외대상자로 관리하였어야 함.
- 그러나 북일면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된 ☆☆☆이 부모와 같이 주거를 같이 하므로 급여관리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된다고 판단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지 않고 관리하는 등 의사무능력 급여관리대상자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의사무능력자에 대하여 급여관리자를 지정하고 급여관리대상자로 관리하시기 바람이며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나. 아동급식업무 소홀

1) 지적사항

- 2016. 12. 20.에 □□마트(대표 ☆☆☆)과 학기 중 월 2회, 방학 중 월 2회 급식을 지원하기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위탁계약에 따라 위탁업체인 명지마트에서는 학기 중에는 총 17회, 방학 중에는 총 7회에 걸쳐 콩나물, 시금치, 애호박, 소세지 등 부식 등을 배달하였음.

- 북일면에서는 1~2개월에 한번씩 명지마트로 부터 급식지원비 청구서를 받았지만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 등의 절차 없이 급식비를 지출하는 등 아동급식지원사업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급식지원 아동, 급식업체 운영, 급식현장 등을 수시로 실태점검 및 의견 수렴하여 급식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다. 인감대장 이송업무 소홀

1) 지적사항

- 「인감증명법시행령」 제5조의3에 의하면 “인감을 신고한 자 또는 인감이 말소된 자가 주소를 변경한 때에는 그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구증명청은 「주민등록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와 관련공부의 이송요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그 신고자 또는 말소자의 인감대장을 주민등록표 및 관련공부와 함께 밀봉하여 신증명청에 이송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총 173건의 인감대장을 이송하면서 25건에 대하여 인감증명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이송요청일로부터 3일을 경과하여 인감대장을 이송하는 등 인감대장 이송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인감대장 이송 시 인감관리대장에 등재하시고 이송요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송하시기 바람.

라.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소홀

1) 지적사항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는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도 북일면에서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4명에게 부과하면서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생략한 채 과태료를 부과하여 징수 하는 등 주민등록증 발급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시기 바람.

6. 농정분야

가.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추진 소홀

1) 지적사항

-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신청 접수 시 이전 년도에 쌀 직불금이 지급되지 않은 신규농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한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98년 ~ ‘00년 기간 중 논농업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를 농지소재지 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2명의 확인을 받아 쌀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요건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북일면에서는 2016년 6필지, 2017년 4필지의 신규농지에 대해 ‘논농업·밭농업·조건불리농지(초지)에 이용된 농지 확인서’ 확인 없이 전산에 등록하고, 쌀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선정하여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지원사업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농업인 대상 쌀 직불금 취지, 대상농업인, 대상농지 요건 등에 대해 홍보하시고,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나. 밭토양 환경개선사업 추진 소홀

1) 지적사항

- 2017년 북일면은 녹비종자인 수단그라스 종자 3,160kg(158포)을 배정받아 93농가에 배부하였으며, '17년 8월경 464필지 79.2ha의 수단그라스 생육 현황을 확인하여 북일면-8738호(2017. 8. 22.)로 주무부서에 조사결과를 회신하였음.
- 조사결과 보고내용 중 14필지 1.7ha에는 수단그라스 외 타작물이 재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자신청 농가와의 전화통화, 마을이장 등을 통한 확인사항에 대해 재확인 또는 점검 없이 오인 보고하여 밭토양 환경개선사업 업무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밭토양 환경개선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람.

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업무추진 소홀

1) 지적사항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 5의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임업용 기자재' 항목 중 '부직포' 및 '고정판'은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품목으로 보조금 정산 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북일면에서는 2017년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사업(대상자: ☆☆☆) 보조금 정산 시 세금계산서 및 정산내역에 기재된 '부직포', '고정판' 구입비용 중 부가가치세 87,270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정산 후 보조금 환급 대상액 43,630원의 환수 조치 없이 보조금이 지급 결정되게 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2) 조치의견

- 미 반환된 부가가치세 환급금 43,630원을 환수하시기 바람.